학교법인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3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1 인	감사정수	2 인
재적이사	11 인	재적감사	2 인

1.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07:30-08:4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6월 15일)

2.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위스테리아홀

3. 임원 출석현황
   - ㅇ 참석 임원
     - 이사(8인) : 박광준, 이덕실, 박영렵, 김한중, 정명철, 오정현, 김재철, 장범식
     - 감사(2인) : 이효금, 김관주
   - ㅇ 불참 임원
     - 이사(3인) : 김영호, 이상춘, 이상학
   - ㅇ 배석
     - 오세원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4. 안 건
   1) 정관 변경
   2) 대학현장위원회 법인위원 추천
   3) 소위원회 구성
   4)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5) 교육용 기본재산 멸실

5. 보 고
   1) 교원 임용 보고
   2) 2021학년도 법인감사 조치결과 보고
   3) 임원 선임 보고
   4) 기타 보고

6. 회의 내용

가. 경 건 회

성 경	-----------------고전 15:58 ------------------	오정현 이 사
기 도	--	오정현 이 사

나. 개회선언

정진수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가 회원을 점명하여 이사 8인 참석으로 성수가 되었음

장범식 김재철 박영립

을 보고하다. 박광준 이사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다. 전차 회의록 확인

정진수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가 전 회의록[2022-2차(2022.04.28.)]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장범식 이사의 동의와 김한중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라. 박광준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일괄 상정하다.

마. 안건 심의

1) 정관 변경

배석한 오세원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이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박광준 이사장이 별첨과 같이 정관 변경(안)을 받기로 제안하니, 박영립 이사의 동의와 이덕실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정관 변경 : 내용 별첨

2) 대학헌장위원회 법인위원 추천

정진수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가 대학헌장위원회 법인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박광준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니, 정명철 이사의 동의와 김한중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직 위	성 명	비 고
이 사	박영립	기획분과
이 사	김재철	인사분과

3) 소위원회 구성

정진수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가 이사 변경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박광준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받기로 제안하니, 이덕실 이사의 동의와 김한중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구 분	성 명	비 고
기획분과	박영립 이사, 김한중 이사, 오정현 이사, 김관주 감사	
재정분과	김영호 이사, 이상춘 이사, 이상학 이사, 이효금 감사	
인사분과	이덕실 이사, 정명철 이사, 김재철 이사	

4)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장범식 총장이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도서수증)(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박광준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니, 박영립 이사의 동의와 김한중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장범식 김재철 박영립

구 분	종 수	권 수	금 액(원)
동양서	1,345	1,551	6,204,000
서양서	28	44	176,000
석사논문	407	814	3,256,000
합 계	1,780	2,409	9,636,000

5) 교육용 기본재산 멸실

장범식 총장이 2021학년도 전자자료 계약 만료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전자자료) 멸실(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박광준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니, 박영립 이사의 동의와 이덕실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구 분	유 형	건 수(종)	금 액(원)
전자자료 (2021학년도 지출예산)	해외DB	22	336,064,835
	국내DB	12	114,748,000
	해외저널	23	659,068,957
	국내저널	5	138,053,000
	전자책	1	9,565,915
	eLearning	6	58,200,000
합 계	-	69	1,315,700,707

바. 보고 사항

1) 교원 임용 보고

장범식 총장이 비정년직 전임교원 임용(1명), 휴직(1명)에 대하여 보고하다.

2) 2021학년도 법인감사 조치결과 보고

정진수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가 2021학년도 법인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다.

3) 임원 선임 보고

정진수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가 이상학 이사 및 김재철 이사에 대한 교육부로부터의 임원 취임 승인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사. 기타 사항

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박광준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장범식 이사, 김재철 이사, 박영립 이사를 제안하니, 이덕실 이사의 동의와 김한중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7. 폐회선언

김한중 이사의 기도 후 박광준 이사장이 8시 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6월 23일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박 광 준
	이 사	이 덕 실
	이 사	박 영 립
	이 사	김 한 중
	이 사	정 명 철
	이 사	오 정 현
	이 사	김 재 철
	이 사	장 범 식
	감 사	이 효 금
	감 사	김 관 주
	기 록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 정 진 수

안건 1	정관 변경

1. 정관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第92조(본부 및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총장의 직할로 교목실, 비서실, 대외협력실, 기획조정실, 대학교육혁신원, 스파르탄 SW교육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창업지원단,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을 두고, 본부 행정기관으로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지식정보처, 연구・산학협력처, 국제처, 입학처를 둔다.	第92조(본부 및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총장의 직할로 교목실, 비서실, 대외협력실, 기획조정실, **대학혁신본부,** 대학교육혁신원, 스파르탄 SW교육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창업지원단,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을 두고, 본부 행정기관으로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지식정보처, 연구・산학협력처, 국제처, 입학처를 둔다.	- 혁신사업추진 부서 신설 (대학혁신본부-혁신사업추진팀)
第94조(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①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을 두며, 대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부 속 기 관 - 한국기독교박물관, 신문・방송국, 생활관, **진로취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이버교육사업단, AI융합연구원 2. 부설교육기관 - 글로벌미래교육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②부속기관 및 부설 교육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 직원으로 임명하고, 부설연구소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단, AI융합연구 원장, 글로벌미래교육원장,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장은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第94조(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①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을 두며, 대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부 속 기 관 - 한국기독교박물관, 신문・방송국, 생활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사이버교육사업단, AI융합연구원 2. 부설교육기관 - 글로벌미래교육원,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②부속기관 및 부설 교육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 직원으로 임명하고, 부설연구소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 단, AI융합연구원장, 글로벌미래교육원장,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장, **부설연구소의 장(사업수행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은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 부속기관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신설(기존 진로취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흡수) - 부설교육기관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폐지 -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전임교원(자구수정) - 필요시 부설연구소장 자격 총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第9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第98조의1 <신설>**	第98조(시행세칙) <좌동> **第98조의1(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장범식 김재철 박영길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의 임직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72조의5 반영
제98조의2 <신설>	제98조의2(행동강령) 제98조의1에 따라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22.06.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